

## 부산시 풍치지구 건축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내에서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지구내의 자연풍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도제한)** 풍치지구내에서는 영제14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에 제기하는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시장
2. 고물상
3. 전염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사, 가축병원
4. 자동차정류소, 자동차매매소, 자동차정비소, 자동차부속품상.
5. 저탄장
6. 제재소, 목재판매소, 전재상
7. 양곡가공업소(다만, 제과점을 제외한다)
8. 공장
9. 철물점, 공구판매점
10. 육외 작업장을 갖는 건축물
11. 자전거 판매점, 자전거 수리점
12. 기타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 풍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

**제 3조(건축물의 규모)** ① 풍치지구내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은 각층의 바닥면적이 2,0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풍치지구내에서는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건출할 수 없다. 할

**제 4조(건폐율등)** ①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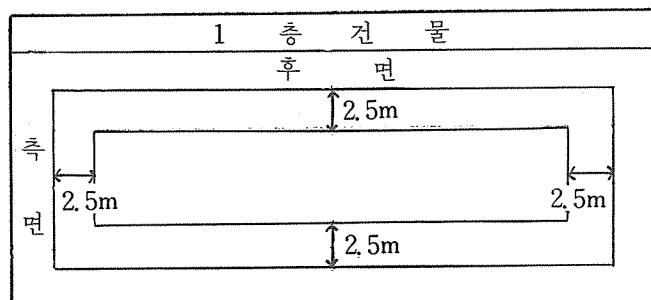
② 풍치지구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당해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제 5조(용적률)**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6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풍치지구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5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지구 지정 이전에 이미 분활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한다.

**제 7조(대지안의 공지)**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선으로부터의 거리 (m)	양측면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m)	후면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m)
1 층 건물	2.5	2.5	2.5



**제 8조(건축물의 높이)** 풍치지구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광호텔, 학교, 기념관, 박물관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풍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 9조(기존건축물)** 풍치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종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영제142조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지기 180-7524, 77, 6, 3)을 얻어 제정한 부산시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시장 박영수

199 1977년 6월 17일

부산시조례 제 1152호